

[수출바우처] 러시아·우크라이나·벨라루스 수출품 국제운송비 정산범위 확대 안내

□ 국제운송비 정산범위 확대 배경

- 우크라이나·러시아·벨라루스 수출품의 반송 및 우회 비용에 대한 바우처 국제운송비 정산을 승인하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 대응 지원 필요
- 현행 물류전용 바우처 및 수출바우처 정산가이드 상 출발국이 한국인 경우만 국제운송비 정산 가능하며, 수출품 반송 및 우회에 따른 비용 정산 불가능

□ 국제운송비 정산범위 확대 내역

- 대상 지원사업: 2021년/20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, 중기부 수출바우처
 - * (산업부)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, 소부장·소비재·서비스·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
 - * (중기부) 내수기업, 수출초보기업, 수출유망기업, 수출성장기업, 수출강소기업
- 대상 품목
 - ① 한국에서 우크라이나·러시아·벨라루스로 운송 중(바이어 인도 前)인 수출품
 - ②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반송(Ship-back) 및 대체 목적지로 우회가 필요한 수출품
- 대상 서비스 분류: 국제운송
 - * 국제운송 분야 총괄수행기관인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국제운송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수행기관만이 국제운송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
- 기존 정산 범위
 - * 증빙서류 상 발송일이 참여기업 협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만 정산 가능하며, 협약기간 누계 2천만원(매칭액 기준) 이내에서 정산 가능

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(해운·항공) 및 보험료 * 인코텀즈 거래조건 구분 상 C조건(CFR·CIF·CPT·CIP), D조건(DAP·DPU·DDP)이 해당 * 운송료에 포함된 유류할증료, 보안할증료, 저유할증료 정산 가능 - 유상거래 샘플운송
------------------	--

	- 아마존 FBA 등 B2C, B2B 플랫폼 입점 위한 운송료
정산 불가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운임, 취급수수료(위험물취급수수료등) 및 도착국 발생비용 -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- 거래서류 상 자사의 현지법인(생산법인) 또는 지사로의 원부자재(중간재) 수출 물류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운영기관 요청 시, 수입자가 참여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 - 관세,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- 각종 문서 송달비용 -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(해외→해외) 운송비용 - 현지 내륙운송 비용 -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,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- 무상거래 샘플운송 <p>☞ 코로나19대응 화상상담 연계 샘플운송 서비스 활용 요망</p>

○ 추가 정산 가능 범위

- 우크라이나·러시아·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운송비(해상·항공 운임)
- 우크라이나·러시아·벨라루스에서 대체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 (해상·항공 운임), 국제복합운송비*
 - *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1차 도착지에서 창고 보관 등 없이 최종목적지로 바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함.
- 최종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우크라이나·러시아·벨라루스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 (Detention/Demurrage Charge)
 - * 국제운송비, 국제복합운송비, 지체료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

□ 적용시기 : 2022.2.22.[화] 이후 발생한 물류비 소급 적용

□ 정산 증빙서류

공통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과보고서 [별지 1호 참조] - 세금계산서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해외 수행기관은 계좌정보(예금주, 예금주 주소, SWIFT CODE, 계좌번호, 은행명, 은행주소 등)가 명기된 인보이스 발행 - 참여기업의 부가세 입금* 확인증
------	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부가세 입금은 계좌송금만 인정(카드결제, 현찰거래 불가) -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된 인보이스 - 해외 송금 시 적용환율 필수 기재 (송금증에 적용환율이 표기된 경우 표기환율 적용,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송금일 적용환율 캡처화면 필수 제출) - 카드결제,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*에 맞는 지출증빙 서류 * 지급수단으로 무통장입금, 현금지급 인정 불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제운송 추가증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출·반송·우회 증빙 - 수출 인보이스(C/I 또는 P/I), 패킹리스트(P/L) -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화물운송장(AWB) (①한국→해외(수출) / ② 해외→한국(반송) 또는 해외→해외(우회) 2부 제출) ▶ 지체 증빙(지체료 정산 시) - 선사에서 수행기관에 청구한 지체료 관련 인보이스 또는 청구서 ▶ 집행 증빙 - 선사 발급 운송견적서* * 해당 서류는 총괄수행기관 웹하드로 제출 - 수행기관이 참여기업 대상 발급한 서비스 견적서 - 부정수급 예방 서약서(수행기관·참여기업)